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·징수 금지 (안 제43조제2항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·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\*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·징수할 수 없도록 함

\*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(현재 한국전력공사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·징수함으로써,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